

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2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제13호)의 “임직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제수당 지급기준)</p> <p>1. ~ 12. <생략></p> <p>13. 운영수당은 <u>임직원</u>에게 지급한다.</p> <p>14. ~ 20. <생략></p>	<p>제2조(제수당 지급기준)</p> <p>1. ~ 12. <현행과 같음></p> <p>13. 운영수당은 <u>직원</u>에게 지급한다.</p> <p>14. ~ 20. <현행과 같음></p>